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 증진 관련 근거 마련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1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 증진 관련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2025. 3. 25.

다. 회 부 일: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 증진 관련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 관광활동 환경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u>8의2.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 권 신장에 관한 사항</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여건의 조성) (생략)	제8조(관광여건의 조성)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정부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신 설>	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다. 검토사항

- 「관광기본법」은 관광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관광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관광진흥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반 조성,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과 재원 배분,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이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 「관광진흥법」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²⁾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광기본법」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② 정부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지난 3월 동법 제3조제2항 개정을 통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결되었고, 이는 개정안에서 포함

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제2항제8호의2 신설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난 3월 동법 개정 당시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동일 취지로 개정되어³⁾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관광기본법」

[시행 2025.10.9.] [법률 제20910호, 2025.4.8., 일부개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또한, 개정안의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 조항 신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등에서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 편의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3) 개정 주요내용 (2025. 3. 20., 제423회국회 제2차 본회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무장애 관광’ 개념 정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가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도 「관광진흥법」이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에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제3조제2항의 장애인 관광접근권은 지난 4월 8일 공포된 「관광기본법」에 포함되므로 신설의 법적 실익이 낮으며,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유사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 점과 장애인의 관광접근권 보장을 통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